소비자정책동향 제150호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온라인상 잊힐권리(right to be forgotten) 도입에 관한 소고

목 차

1. 서론 / 01
2. 잊힐권리의 개념과 도입 문제 / 03
3. 해외 입법례 및 국내 법제도 분석 /08
4. 결론 및 입법적 제안 / 19

황의관 부연구위원 | humanright77@kca.go.kr

1. 서론

□ “인터넷은 절대 잊지 않는다.” MIT 공대 교수인 셰리 터클은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란 책에서 인터넷에 공유되는 정보의 삭제가 거의 불가능함을 이렇게 표현하였음[1)]

□ 인간이 삶의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면,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냐면 기쁘고 행복한 순간만큼이나 슬프고 괴롭고, 부끄럽고, 비참한 순간이 존재하기 때문임

○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란 말이 있고 망각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하지만 디지털시대, ICT 기술발전은 정보의 유통, 복제, 보관이 손쉽게 만들고 그 결과 망각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 이제 기억이 원칙이고 망각이 예외가 되고 있음[2)]

□ 이런 ICT 시대에 망각의 필요성에 따라 2009년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가 주장한 것이 잊힐 권리임[3)]

○ 초기에는 삭제권에 가까운 것으로 정보를 생산할 때 정보 만료일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방식을 주장했음

○ 이후 SNS 발달 등에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잊힐 권리의 인정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EU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인정되어 법제화되었음

1) 이권일, “디지털 데이터와 잊혀질 권리”,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2023), p.172.
2) 이권일, 앞의 글, p.172.
3) 이권일, 앞의 글, p.173.

○ 한편, 잊힐권리에 관하여 우리나라도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 서비스’ 등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제화되지는 않았음

□ 이에 본 고는 잊힐권리의 개념과 배경, 잊힐권리 도입시 문제가 되는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잊힐권리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국내 법제도의 현황을 검토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잊힐권리 도입을 위한 입법적 제안을 하고자 함

2. 잊힐권리 개념과 도입 문제

2.1. 잊힐권리 개념과 등장 배경

□ **(개념)** 잊힐권리(right to be forgotten)[4]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개념상 범위를 넓게 보는 관점에서 이를 좁게 보는 관점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음

○ 대체적으로 i)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로 보는 것을 광의의 개념으로, ii)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인터넷상에서의 접근을 배제(제한)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로 보는 것을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

- 협의의 개념은 잊힐권리 대상을 적법하게 처리된 정보가 시간 경과로 정확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관련성이 없고, 과도해진 경우로 제한함[5]

- 최초로 잊힐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이하'ECJ')의 판결상 개념은 협의에 가까운 것이지만, 잊힐 권리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를 통한 자신의 인격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란 점에서 이를 최대한 광의로 볼 필요가 있음[6]

○ 잊힐권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을 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고에서는 광의의 개념을 채택함

---

4) 종래 '잊혀질 권리'란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 본래 동사 '~잊다'의 피동형태는 '잊히다'가 맞고 '잊혀지다'는 이중 피동표현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님. 이에, 최근에는 '잊힐권리'란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본 고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잊힐권리'로 표현함. 동사 '잊히다'의 피동에 관하여는 조선일보(2025.8.20.), [신문은 선생님] [예쁜 말 바른 말] [408] '잊히다'와 '잊혀지다'를 참조하였음. 기사링크는 아래와 같음 (https://www.chosun.com/national/nie/2025/08/20/W6V4VC25XFFQFKMVENWS73CLDM/, 최종방문 2026.4.16.)).

5) 구본권,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2014), p.16; 황창근,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과 법제화의 한계",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2016), p.316.

6) 같은 견해, 이권일, 앞의 글, p.180.

○ 이에, 잊힐 권리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의 삭제 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로 정의함

- 개념상 잊힐권리가 온라인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잊힐 권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논의의 트렌드를 고려할 때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임

□ **(배경)** 잊힐권리는 스페인의 Mario Costeja Gonzalez 사건(이하 ‘Mario 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이하 ‘ECJ’) 판결에서 인정되어 이슈화된 후 여러 논의를 거쳐 EU GDPR에 도입

○ Mario 사건은 스페인의 변호사인 Mario가 이미 해결된 사건임에도 1998년 1월, 3월에 자신의 부채와 부동산 경매공고가 게재된 La Vanguardia 신문 기사가 2009년까지 구글에서 검색되자 자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스페인 정보보호위원회(AEPD)에 해당 신문사, 구글 스페인, 구글 본사를 상대로 해당 기사의 삭제를 청구한 사건임[7)]

○ AEFD는 La Vanguardia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게 발행된 정보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고, 구글 스페인 및 구글 본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가 링크됨으로서 Mario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링크 중단을 명령하였고,

- 이에, 구글은 AEPD의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스페인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스페인 고등법원은 선결문제로서 ECJ에 해당 사안에 대한 예비 판결을 요청하였음

7) 최종선, “잊힐 권리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제1호(2016), p.73; 최자림, “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 Law & Technology 제1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19), p.23 각주 5.

- 스페인 고등법원이 ECJ에 질의한 사항은 ⅰ) EU 정보보호지침[8]을 구글 같은 검색엔진 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ⅱ) EU 정보보호지침을 미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구글 스페인에 적용할 수 있는지, ⅲ) 검색엔진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9]

○ ECJ는 ⅰ) 서버가 유럽 이외 지역에 있더라도 EU 내 지사 또는 자회사를 통해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경우 EU 지침이 적용될 수 있고, ⅱ) 검색엔진 서비스제공자에도 정보보호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며, ⅲ) 부정확한(inaccurate), 부적정한(inadequate), 무관한(irrelevant), 과도한(excessive) 정보인 경우 검색엔진 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가 링크된 것을 삭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인 권리를 인정하였음

- ECJ는 다만, 잊힐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닌 상대적인 권리이므로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타인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여야 하고, 잊힐 권리 요청자가 공인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10]

○ Mario 사건은 잊힐권리를 인정한 판례로 큰 의미가 있으며 잊힐권리를 인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와 잊힐 권리의 주체에 따른 인정 범위의 문제 등을 보여주고 있음

2.2. 잊힐권리 범위와 관련 문제

□ 잊힐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표1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제3자가 게시한 정보삭제 및 검색배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잊힐 권리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11]

8) GDPR 이전의 EU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규범이었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현재의 GDPR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GDPR의 모태로 볼 수 있음.
9) 최종선, 앞의 글, pp.73~74.
10) 최종선, 앞의 글, pp.74~75.

○ 잊힐권리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무제한 확산·전파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등장한 것임[12)]

- 잊힐권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권을 제한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는 권리로서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그리고 당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 등장함

- 따라서 잊힐권리의 인정범위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잊힐권리에 관하여 아래 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음

〈표 1〉 잊힐권리 사례 구분

구분	세부 사례	청구권 종류
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	원문삭제
②	정보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게시	
③	정보주체가 게시한 정보를 제3자가 공유	검색결과 배제
④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게시	
⑤	뉴스, 기사 등 언론이 정보주체를 보도	

출처: 박용숙, “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논의현황과 나아갈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9권(2016)

□ 잊힐권리의 범위에서 언급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충돌 등 법적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동의 철회를 주장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등을 주장하여 검색엔진 서비스제공자에게도 검색결과 배제 등을 주장할 수 있음

11) 박용숙, “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논의현황과 나아갈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9권, 2016, 최진응,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에 대한 검토”,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2020.9.7.).

12) 잊힐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아닌 인격상에 관한 권리로서 보기도 한다. 권태상, 앞의 글, pp.177~179; 허완중,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26권 제3호(2020.9), pp.133~134.

○ (②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하여 내부 관리 기능 등을 활용하여 잊힐권리 실현이 가능하고 타인의 권리침해 소지는 적음

○ (③의 경우) 정보주체가 삭제 또는 검색배재를 요청하는 경우 제3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어, 이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④의 경우) 검색배제를 위해서는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고 해당 개인정보가 공개된 정보인지, 이의 획득 경로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비교형량이 필요

○ (⑤의 경우) 언론의 기사나 뉴스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의 검색배제나 삭제요청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됨

- 따라서 이 경우 잊힐권리를 위한 법적 근거, 정보주체의 지위(공인여부 등), 개인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한 비교형량이 필요

3. 해외 입법례 및 국내 법제도 분석

3.1. 해외 입법례

3.1.1. EU

□ 잊힐권리를 인정한 Mario 판결 후 EU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대체하는 EU GDPR을 제정·시행*하면서 Mario 판결을 반영하여 잊힐권리를 법제화하였음

* GDPR은 전문 총 173개 항, 본문 총 11장 9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기존 지침에 비해 조문 수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음[13)]

※ GDPR은 지침이 아닌 규정(Regulation)의 법형식으로 제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EU 회원국 내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 GDPR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컨트롤러는 다음 각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여 잊힐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GDPR 제17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삭제 의무가 있는 경우 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술적 조치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3항은 표현의 자유 등에 의해 잊힐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GDPR 제17조

1.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컨트롤러에게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가진다.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2022), p.19.

(a) 개인정보가 수집된, 그렇지 않으면 처리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b) 정보주체가 제6조(1)의 (a)호 또는 제9조(2)의 (a)호에 따라 처리의 기반이 되는 동의를 철회하고, 해당 처리에 대한 기타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c) 정보주체가 제21조(1)에 따라 처리에 반대하고 관련 처리에 대해 우선하는 정당한 근거가 없거나, 정보주체가 제21조(2)에 따라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d)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

(e) 컨트롤러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삭제되어야 하는 경우

(f) 제8조(1)에 규정된 정보사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임)

2.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공개하였고 전항에 따라 삭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가용한 기술과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가 그들에 의한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링크, 사본, 복제들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을 알리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합리적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

(b) 컨트롤러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을 행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c) 제9조(3)뿐만 아니라 제9조(2)의 (h)호 및 (i)호에 따른 공중보건 분야의 공익상의 이유인 경우

(d) 제89조(1)에 따른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권리가 그 처리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 법적 권리의 확립,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한 경우

○ 특히, GDPR은 아동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잊힐권리가 중요함을 전문에서 강조하고 있음

GDPR Recital 65

"...해당 권리(잊힐 권리를 의미)는 특히 정보 주체가 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어린 시절에 동의를 제공하고 나중에 특히 인터넷에서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정보 주체는 해당자가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관계없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한편, GDPR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령자에게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3.1.2. 미국

□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이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잊힐권리를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규율하고 있음[14)]

○ 잊힐권리를 규정한 연방법률이 부재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침해소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주요 이유임*

*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 자체가 없으며 의료정보 등 개별 분야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률만 있으며, 이는 통상 연방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에 의한 자율적 통제를 선호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임

○ 언론보도를 통한 개인정보 등과 같이 출판이 허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잊힐권리 보장을 위한 연방 법률은 없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일부 잊힐권리가 인정되고 있음**

****16 CFR § 312.4 - Notice.**

(d) Notice on the Web site or online sevice (중략) 본 조항에 따른 온라인상 통지 또는 온라인서비스의 정보관행 관련 통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1) ~ (2) (생략)

(3) 부모는 자녀의 개인정보를 심사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정보수집 또는 사용에 대한 허용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

14) 백수원, "EU 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에 따른 과제: 유럽과 미국의 논의를 겸하여", 미국헌법연구 제26권 제2호(2015); 최진응, 앞의 글, p.7에서 재인용.

※ 위의 연방 규칙은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의 이행을 위한 규칙으로 온라인상 아동의 정보수집에 관한 통지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한 규칙임

○ 캘리포니아 주법은 온라인서비스 운영자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페이스북과 구글 등 인터넷서비스에서 직접 게시한 자신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삭제 또는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15]

○ '23년 연방의회는 "개인정보 삭제 및 광범위한 추적 및 교환 제한 법안(Data Elimination and Limiting Extensive Tracking and Exchange Act, DELETE Act)을 발의

- DELETE Act는 미국인들이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데이터 브로커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FTC가 설계·운영할 것을 규정[16]

○ '24년에는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미국 프라이버시 권리법(American Privacy Rights Act, APRA) 제정 추진이 논의된 적 있음

- APRA는 주(州)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하여 연방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통일된 법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임

- APRA의 주요내용 중 데이터 브로커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처리 중단을 요청할 권리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도록 규정[17]

---

15) CA Bus & Prof Code §22581(a)(1) "Permit a minor who is a registered user of the operator's Internet Web site, online service, online application, or mobile application to remove or, if the operator prefers, to request and obtain removal of, content or information posted on the operator's Internet Web site, online service, online application, or mobile application by the user."
16)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2023년 7월호(2023), pp.4~5.
17)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2024년 5월호(2024), pp.1~4.

3.1.3. 일본

□ 일본의 경우 잊힐 권리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상 인격권에 근거한 개인정보 삭제청구 및 손해배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성명 등의 검색결과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해도 검색엔진은 동 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EU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 결과 삭제와 같은 잊힐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민사법으로 보호하고 있음[18)]

□ 일본에서 민사법에 근거해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삭제를 명령한 판례가 있음

○ 2011년 여고생을 대상으로 아동 매춘한 피의사실로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가 체포 당일 언론과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에 대해 검색엔진을 상대로 인격권에 근거한 검색결과 삭제를 청구하여, 1심과 2심에는 청구가 인용되었음

○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당해 사건에서 공익성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검색삭제 청구를 기각하였음

- 최고재판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해당되는 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적보호 대상이지만 검색결과의 제공은 검색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어 이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임

18) 최진응, 앞의 글, p.9.

- 따라서 공표되지 않을 이익이 '명백하게 우월한 경우' 검색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구가 정당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아동매춘이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로서 벌칙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않을 법적이익이 '명백히 우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음[19]

3.2. 국내 법제도 현황과 분석

3.2.1. 개인정보보호법

□ 현행 법제에서는 EU와 같은 잊힐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개별 법률*에서 잊힐권리에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일정 수준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 보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20]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잊힐 권리 관련하여 논의됨

- 이들 법률의 경우 잊힐 권리의 범주에 포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각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동 법 제36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잊힐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제36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19) 최진응, 앞의 글, p.10.
20) 정애령, "잊힐 권리 실현방안의 모색- 언론피해구제방안으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2019), p.151; 최진응, 앞의 글, p.5; 최자림, 앞의 글, p.25; 손현·김태열,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범위", Legislative Issue Brief(2016년 12월), 한국법제연구원, p.3.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하여 개인정보파일 형태로 운용 및 보관하는 개인정보만이 동 법의 적용대상임

- 따라서 정보주체가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 또는 원본 정보를 제3자가 복제하거나 링크, 제3자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는 동법 제36조의 삭제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21)]

○ 또한, 제36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검색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검색엔진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워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제36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수집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적용됨

- 그러므로 법 제36조는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검색엔진 서비스를 통한 검색결과에 대한 삭제 또는 배제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21) 최자림, 앞의 글, p.25; 최진응, 앞의 글, p.5; 정애령, 앞의 글, p.152; 손현·김태열, 앞의 글, p.4.

○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는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제3장에서 제8장까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제36조는 언론 기사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

3.2.2.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본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르게 정보주체가 게시하거나 제3자가 원 정보를 공유 또는 제3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에도 적용되고, 해당 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수집되어 개인정보파일 형태로 관리되는 정보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님

○ 그러나 제3자가 게시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제3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동법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하는 정보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주체가 동법상 삭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가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취하는데 이는 최장 30일의 한계가 있음

3.2.3.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법」 제14조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허위기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이 조항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허위보도’에 대하여만 정정청구를 할 수 있어 허위가 아닌 진실인 경우 또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없고, 기사삭제 청구권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잊힐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언론기사에 대하여 검색결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3.2.3. 잊힐권리 관련 정책

□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2016년 6월부터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됨에 따라 동 가이드라인은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임

○ 동 가이드라인은 자기 게시물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제3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주체) 잊힐권리 행사는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과 사자(死者)가 생전에 잊힐 권리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사자의 유족

- (대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

- (상대방) ‘게시판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검색서비스 제공사업자, 한국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임

○ 또한, 가이드라인은 ‘법률 또는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 또는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가이드라인의 한계에 관하여 주로 ‘제3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비적용’, ‘법적 구속력의 부재’,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음[22)]

□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약칭) 서비스’*를 ‘2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임

※ 시행 첫해 꾸준한 사회적 관심 속에 총 11,487건 접수/ 10,813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23년: 24세 이하 누구나, 18세 미만 시기에 올린 게시물 → ‘24년: 30세 미만 누구나, 19세 미만 시기에 올린 게시물)

○ 이에, 30세 미만 국민 누구나 19세 미만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 해당 게시물의 접근배제(삭제, 블라인드 등) 신청을 받아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함

22) 최종선, 앞의 글, pp.82~82; 최진응, 앞의 글, p.7.

4. 결론 및 입법적 제안

4.1. 결론

□ 정보의 손쉬운 복제, 가공 등 재생산을 통한 빠른 전파와 정보의 장기간 존속 등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정보주체가 동의를 거쳐 제공하거나 자발적으로 게시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특성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위한 '잊힐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생각했던 것 보다 해당 정보의 확대·재생산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으며, 온라인에 게시물 등이 상당히 장기간 존속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은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주체로서 이들이 온라인에 제공 또는 게시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성인이 된 후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EU를 중심으로 잊힐 권리 인정 범위, 법제화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잊힐 권리를 인정한 ECJ의 판결 후 이를 수용한 EU GDPR의 제정으로 잊힐 권리가 명문화되었음

□ 현행 법제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잊힐 권리가 일정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EU GDPR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님

○ 현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에서는 각 법률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잊힐권리가 인정되는 한계가 있음

-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삭제 가능

-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허위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

-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제3자가 개입한 개인정보라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인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삭제나 임시조치가 가능함

□ 그러나 현행 개별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음

□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잊힐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입법이 필요함

○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게시한 개인정보를 제3자가 개입(공유하거나 사용하여 재생산한 경우)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삭제요청이 어렵고,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구성요건(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법상 구제 수단의 적용이 어려움

○ 잊힐 권리에 관한 해외 입법사례에서도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EU GDPR도 이를 전문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를 주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국내 법제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임

○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우개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를 포함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4.2. 입법적 제안

□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고려할 때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

○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개인정보보호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집중하고 있으며, 여러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잊힐권리 자체가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로서 속성을 가지며*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과 지우개 서비스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함**

* EU의 경우 역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GDPR에 잊힐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정보삭제 요청권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권리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상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23)]

□ 잊힐권리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제화하는 경우 ⅰ) 아동·청소년으로 주체로 한정하여 입법하는 방안, ⅱ)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 번째 입법방안은 미성년자로 잊힐 권리 주체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성년자 시기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에 대해서는 성년 후 이의 삭제 필요성이 크고 현재 지우개 서비스의 활성화 등이 하나의 실증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입법적 정당성이 있는 방안임

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440호), p.8.

○ 다만,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면서 주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잊힐 권리의 인정 범위를 한정하게 되어 이를 도입하는 입법 취지를 퇴색하게 만들고,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잊힐 권리의 주체를 제한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함

○ 두 번째 방안은 주체를 한정하지 않아 잊힐 권리 법제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전면적인 잊힐 권리 도입에 대한 반대로 입법 과정의 난이도가 첫 번째 방안에 비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 잊힐권리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제화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서 제3자가 개입(공유 또는 사용하여 재생산한 경우)하여 가공한 경우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검색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

○ 다만, 정보주체에게 잊힐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제3자의 표현의 자유와 공중의 알권리와의 조화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EU GDPR 등을 참고하여 일정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회적 차별을 야기해 현저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서, 민감정보, 오래되어 부정확한 정보, 편견을 낳는 정보, 고유식별정보에 한해 잊힐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24)]

- 또한, 정보주체의 잊힐권리와 제3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잊힐 권리 청구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운동선수 등 공인에 대한 정보, 학술연구·보도목적·정치활동·공중보건 등의 공적 정보 등인 경우 잊힐 권리에 의한 청구를 제한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와 비교·형량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4) 최진응, 앞의 글, p.11.

[참고 문헌]

- 구본권(2014),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가을호, 14-21.
- 백수원(2015), EU 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에 따른 과제: 유럽과 미국의 논의를 겸하여, 미국헌법연구 제26권 제2호, 125-161.
- 손현·김태열(2016),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범위, Legislative Issue Brief 한국법제연구원, 1-7.
- 이권일(2023), 디지털 데이터와 잊혀질 권리,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 171-196.
- 정애령(2019), 잊힐 권리 실현방안의 모색 – 언론피해구제방안으로 기사삭제 청구권에 대한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 143-178.
- 최종선(2016), 잊힐 권리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제1호, 63-113.
- 최자림(2019), 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 Law & Technology 제1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34.
- 박용숙(2016), 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논의현황과 나아갈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9권, 49-101.
- 최진응(2020), 잊힐 권리(Right ti be forgotten) 법제화에 대한 검토,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1-16.
- 허완중(2020),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107-154.
- 황창근(2016),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과 법제화의 한계,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299-32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개인정보

보호법 가이드북」(2022).

- 한국인터넷진흥원(2023),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2023년 7월호.

  _____(2024),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2024년 5월호.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440호).

- 조선일보(2025.8.20.), [신문은 선생님] [예쁜 말 바른 말] [408] '잊히다'와 '잊혀지다'

*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